

대구지방법원 2024. 4. 17 선고 2022가단12619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3. 6.

판 결 선 고 2024. 4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,00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, 604,241,030원 및 그 중 417,522,984원에 대하여 2022. 5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‘3,00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’를 제외하고는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(다만 ‘채권자’는 ‘원고’로, ‘채무자’는 ‘피고’로 본다)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22. 5. 3.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604,241,030원 및 그 중 417,522,98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2. 5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,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의 보증한도액이 3,000,0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3,00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의 요구에 따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D(이하 ‘D’이라 한다)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신탁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, 원고가 급하게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함에 따라 저가낙찰이 되었는데, 원고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및 담보목적물의 공매 절차 과정에 원고의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 액수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, 소송비용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기각되는 부분의 비중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.

판사 허이훈

별지